

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(청소미화) 채용 공고

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9월 22일

해 양 경 찰 청 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유형	근무기관	직무등급	채용분야(직종)	채용인원	담당직무
계				1명	
공무직	해양경찰청 (인천)	1급 직무	청소미화	1명	해양경찰청 청사 청소미화 업무

※ 본 공고문에는 채용분야 주요 업무를 위주로 명시하였으므로, 채용대상자는 해당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

※ 공무원 직급이 아닌 「해양경찰청 공무원근로자 등 관리규칙」에 의한 등급임

※ 담당 직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[첨부1] 참고

2. 근무조건

가. 신 분

○ 청소미화 : 공무원 근로자 / 정년 만60세

※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며, 「해양경찰청 공무원 근로자 등 관리규칙」이 적용됨.

나. 근무시간

○ (청소미화) 주 5일 / 40시간 / 1일 8시간 근무

- 06:30 ~ 15:30(8시간 근무, 휴게시간 1시간) ※ 필요시 연장근무 가능

- 기본근무시간 209시간 기준(주휴 포함)

※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, 필요시 비상근무 및 연장근무 등을 명령할 수 있음.

다. 보 수 ※ 「해양경찰청 공무원근로자 등 관리규칙」 제41조(보수) 기준

채용분야	직무등급	보수(월, 세액공제 전)	기타
공무직 청소미화	1급 직무	2,388,150원 - 기본 급: 2,163,150원 ※ 209시간 기준 - 직급보조비: 65,000원 - 정액급식비: 160,000원	※ 법정근로수당(연장, 야간, 휴일 근로) 등 별도 ※ 명절상여금 기본금 기준 60% 지급

※ 공무원 직급이 아닌 「해양경찰청 공무원근로자 등 관리규칙」에 의한 등급임

※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본인부담분 보험료 및 각종 세금은 보수에서 공제

※ 해양경찰청 임금기준 등의 제·개정 및 업무조정에 따라 보수 및 근무 시간,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.

라. 복리후생 : 정액급식비, 명절상여금 등 지급

마. 4대 보험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
바. 수습기간 : 채용 계약 후 3개월

※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.

3. 응시자격

가. 공통요건

- 「해양경찰청 공무원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」 제17조 및 「국가공무원법」의
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해양경찰청 공무원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7조(채용 결격사유)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
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『형법』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
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
지나지 아니한 자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
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74조 제1항 제2호 및
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『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미성년자에 대하여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 제2조에 따른 성폭
력범죄 또는 『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
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
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
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(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)

※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.
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
○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

❖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(이해충돌방지법)

- 소속 고위공직자 /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-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-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
나. 자격요건(필수요건) ※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구 분	내 용
청소미화 1급 직무	■ 위 공통요건 필수 ■ 만18세 이상 ~ 만60세 미만 ■ 해당 직종의 직무(직무기술서 참조)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

다. 우대요건 ※ 서류전형시에만 적용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구 분	내 용		
청소미화 1급 직무	■ 청소미화 분야 근무경력		
공통 가산사항	장애인	5%	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

○ 경력기준 : 해당 지원 분야(청소미화)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

※ 해당 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)

4.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

가. 채용공고 : 해양경찰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

나. 서류접수기간 및 방법

○ 접수기간 : ' 26. 9. 22.(화) ~ ' 26. 10. 7.(수)

- 전자우편 : (시간) 마감일 18:00까지 / (주소) soopark3117@korea.kr

- 방문·등기우편 접수 : 09:00~18:00(12:00~13:00제외), 토·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

○ 접수방법 : 해양경찰청 1층 민원실 방문접수, 등기우편(붙임2) 또는 전자우편(E-메일) 접수

※ 전자우편 접수

- 접수처 : soopark3117@korea.kr

- 제출제목 : 해양경찰청 공무원직 근로자 지원서_성명(청소미화)

[예시 : 해양경찰청 공무원직 근로자 지원서_홍길동(청소미화)]

※ 등기우편 접수(공무직 응시원서 재중 명기)는 마감일 18:00까지 해양경찰청 민원실에 접수(도착)된 원서만 한하여 유효(도착분에 한함, 소인분 X)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

※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,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총무계
(청사관리반) 공무원직 근로자 채용담당자 앞 ☎ 032)835-2528

5. 세부일정

구 분	일 정	내 용
채용공고	2026. 9. 22.(화) ~ 10. 7.(수)	▶ 해경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
서류 접수	2026. 9. 22.(화) ~ 10. 7.(수) 18:00까지	▶ 전자우편(E-메일) 접수(soopark3117@korea.kr) ▶ 해경청 민원실 방문접수 또는 등기(우편) 접수 ※ 마감시간 내 민원실 접수(도착)분에 한함
서류 합격자 발표	2026. 10. 15.(목)	▶ 해경청 홈페이지 공고 ▶ 면접장소 공고
면접시험	2026. 10. 21.(수)	▶ 심사위원 면접 심사 / 장소 : 해양경찰청 본청
최종합격자 발표	2026. 10. 23.(금)	▶ 해경청 홈페이지 공고
임용	2026. 11. 9.(월)	▶ 채용 일정에 따라 임용일은 변경 가능

- 응시인원이 모집인원 이하인 경우, 공고연장 가능(기존 응시자 공고 연장 개별통지)
-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
-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, 면접시험 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
- 임용 일정 변경시 개별 통보(최종합격자)

6. 응시자 제출서류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

< 공통사항, 필수제출 >

-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(필수제출서류 1) 1부
- 응시원서(필수제출서류 2) 1부
- 자기소개서(필수제출서류 3) 1부
-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(필수제출서류 4) 1부
-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(필수제출서류 5) 1부
- (남성만) 주민등록초본 1부(병역증명서 가능) * 공고일 이후 발급본

※ 필수서류 누락시 자동탈락이므로, 제출 전 빠뜨린 서류가 없는지 확인바랍니다.

<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·제출시 유의사항 >

- ① 경력증명서에 지원 분야 관련 직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
(경력증명서상 담당 직무가 모호할 경우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)
- ②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,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(발급확인자, 연락처 포함)하고,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
- ③ 서류전형 합격자는 추후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 등을 추가 제출받아 서류 진위여부를 확인 예정(경력증명서와 추가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)

< 개별사항,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>

- 【관련 자격증 해당자】자격증 사본 1부
- 【우대요건】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1부

7. 시험방법

가. 서류전형

응시인원에 따른 서류전형 계획

응시인원	합격인원 범위	비고
10배수 이하	-	소극적 서류전형*
10배수 초과	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	적극적 서류전형

* 소극적 서류전형 :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여 적격일 경우 서류전형 합격

-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여부 판단
- 자기소개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
 - 평가기준
 - ① 자기소개서 ② 업무수행계획서 ③ 기타 우대요건 및 가산사항
-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선정하며,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하여 10배수 초과시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
 - ※ 서류전형 지원자가 10배수에 미달할 경우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로 결정
 - ※ 우대요건 관련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서류점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나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최종합격자 결정

< 면접시험 세부기준 >

- (면접방식) 대면·개별면접(면접 대상인원 등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)
- (평가내용)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,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기준으로 평정

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·건강상태	상	중	하
② 관련업무 지식과 응용능력	상	중	하
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상	중	하
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	상	중	하
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	상	중	하

○ (합격결정)

- 평정결과 고득점자 또는 ‘상’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, ‘상’의 개수가 같을 경우 ‘중’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
 - ※ 동점자 우선순위 : 1.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(장애인) 2. 서류전형 성적 순 3. 경력
 - ※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(3배수 이하)로 결정할 수 있음

○ (불합격)
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‘하’로 평정하였을 때
 - ※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하여 결정

8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,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 허위기재,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(재학생) 등으로 채용 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 현황, 합격선(컷라인)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, 채용신체검사,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,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.

-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(☎ 032-835-2528)로 문의 바랍니다.

9. 채용서류의 반환 등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,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,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(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,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)
- 또한,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(등기우편 등)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.

< 청소미화 1급 직무 >

구 분	채용분야	선발예정인원
공무직 근로자	청소미화	1명

계약 기관명	근무예정부서 (근무지)
해양경찰청	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(인천광역시)

주요업무	○ 해양경찰청 내·외부 청소 ○ 옥상 및 휴게공간 청소 ○ 쓰레기 분리수거 및 운반 ○ 화장실 및 청소 소모품 관리
------	---

필요역량	○ 성실성, 청렴성, 친절성 ○ 관계법령, 규정 준수 태도 ○ 조직 친화력 및 적극적 업무자세 ○ 업무 수행 관련 비밀엄수, 품위유지 의무
------	--

필요지식	○ 청소작업 관련 지식 및 경험 ○ 청소작업 관련 안전지식 ○ 청소 물품, 약품 및 장비에 대한 지식
------	--

<필수제출서류 1>

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

응시번호	응시분야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
※ 담당자 기재				

▣ 제출 목록(총괄표)

목 록	제출	미제출
< 공통사항, 필수제출 >		
1. 응시원서 1부		
2. 자기소개서 1부		
3. 가족 채용 제한 여부확인서 1부		
4.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		
5. (남성)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반드시 포함) 또는 병적증명서 1부		
< 개별사항,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>		
6. (경력) 경력 증명서 (부) (경력기간 : 년 월)		
7.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 1부		

※ 제출 목록에 ✓ 표시 후 **순서대로** 집계 또는 클립으로 편철

※ **스테이플러 사용 금지**

<필수제출서류 2>

응시번호*

채용담당자가 기재함

응시원서

1. 인적사항

성명	(한글)	병역사항	☐ 필 ☐ 미필 ☐ 면제 ☐ 해당 없음
	(한자)	응시분야	
현주소 (거주지)			
연락처	(본인휴대폰)	전자우편	
	(비상연락처)		
성별	☐ 남 ☐ 여	복수국적 여부	☐ 해당 ☐ 미해당

2. 자격사항

* 지원직무 및 우대 국가기술/전문자격,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.

자격증명	자격번호	발급기관	취득일자	자격증명	자격번호	발급기관	취득일자

3. 경험 혹은 경력사항

* 지원직무 관련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.

근무기관(부서명)	근무기간	직위(급)	직무내용	근무형태
00기업(00팀)	0000년 00월 00일 ~ 0000년 00월 00일	대리	전기안전관리자	상근/비상근/ 교대근무/시간제

* 응시번호는 미기재,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페이지를 늘려서 작성 가능(최대 2페이지 이내)
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지원자 : _____(인)

응시원서 작성요령

1.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
2.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
3. 『응시원서』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.
 - ① 응시번호 : **기재하지 않음**
 - ② 현주소 및 연락처(핸드폰)은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
〈 응시원서 접수사항, 면접시험 수험번호 등은 연락처로 통보 예정 〉
 - ③ 자 격 : 관련 자격증명을 기재
 - ④ 경 력 : 관련 근무경력을 기재

자 기 소 개 서

응시분야	성명	생년월일
		. . .
※ 작성요령 - 제시된 소재목(주제)을 바탕으로 <u>작성자 본인의 역량</u>을 기술 - 분량은 <u>A4용지 2매</u> 이내, 워드프로세서, 자필을 사용하여 작성 (신명조, 13p)		
◎ 자기소개서		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
자기소개		
응시취지 및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	(지원동기 및 포부)	

학업 및 경험(경력)	(성취도 및 활동내용)
특기사항	(장점, 보유자격 및 기술 등)
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
20 년 월 일	
성 명 :	(서명)

※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.

<필수제출서류 4>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해양경찰청	공개채용	공무직
	채용사유		
	결원보충	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응시분야	생년월일	성명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.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,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.

20 . . .

성명 : (서명)
해양경찰청장 귀하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(반환을 원할 경우 작성)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응시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위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 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경찰청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[붙임2]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반드시 기관 주소 발송

[보내는 사람]

응시분야	공무직 근로자 (공무직)
성명	
휴대폰	

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 제출서류 재중

[관계자 외 개봉금지]

※ 제출서류는 '26. 9. 22(화) ~ 10. 7(수) 18: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(민원실 접수(도착)분에 한함)

[받는 사람]

등기 발송증 부착

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
총무계(청사관리반) 공무직근로자 채용담당자 앞
☎ [032] 835 - 2528

2

1

9

9

5